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1998.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사유

종전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가 의료보호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이 있어, 행정쇄신과제인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에 의거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권한을 등장에게 재위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를 신설 (별 표)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4. 참고사항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관련 별표의 위임사무중 시민국(사회복지과)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 민 국 (사회복지과)	2.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 지방자치법제15조 ·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	동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총무~재무국	생 략			현행과 같음			
시 민 국 (사회복지과)	1.시체매장 · 화장 또는 개장신고	○매장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5조의2 · ○동법시행령제1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동 장	시 민 국 (사회복지과)	1.시체매장 · 화장 또는 개장신고	○매장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5조의2 ○동법시행령제1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동 장
(신 설)					2.의료보호증 지사용 확인제도	○지방자치법제 95조제1항	동 장
도시정비국 ~ 보건소	생 략			현행과 같음			